

『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의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- 현행 :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교섭단체 구성(안 제2조)
 -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됨.
- 교섭단체 기능(안 제2조의2)
 -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
 -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
- 교섭단체 지원(안 제2조의3)
 -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
5. 검토의견

-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단체를 의미하며, 이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정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지방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,

본 개정조례안은 5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, 교섭단체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음. 무엇보다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간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.